
춘천미래동행재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 (제 정) 2022.04.07.
 - ☐ (개 정) 2024.04.03.
 - ☐ (개 정) 2024.10.11.
 - ☐ (개 정) 2024.12.24.
 - ☐ (개 정) 2025.04.29.
-

춘천미래동행재단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정) 2022.4.7.
(개정) 2024.4.3.
(개정) 2024.10.11.
(개정) 2024.12.24.
(개정) 2025.4.29.

-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춘천미래동행재단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춘천미래동행재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 노인일자리 사업단 참여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 조직 구성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개정 2024.4.3.>, <개정 2025.4.29.>



-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표 2>와 같이 한다.
- <표 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직위	역할	담당업무
이사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 표명 -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전략경영실 과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 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절차와 내용 숙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위험성평가단	<삭제>

<개정 2024.4.3.>, <개정 2024.10.11.>, <개정 2025.4.29.>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재단 사무직 근로자), 방문객, 노인일자리 참여자, 단위사업 참여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① 재단 내부 또는 노인일자리 근무시설(근무지)에 대한 활동범위 중 모든 위험시설
- ② 근무시설(근무지)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⑤ 근무시설(근무지)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

<개정 2024.4.3.>, <개정 2025.4.29.>

제6조(실시시기) 춘천미래동행재단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 근무시설(근무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한다. <개정 2025.4.29.>
- ②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사업단 기준으로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수시평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신규 근무시설(근무지) 추가 배정 시

다. 근무시설(근무지) 변경 시

라. 근로자, 근무내용 변경 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③ 근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된다
- ④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부개정 2024.4.3.>

- ① 1단계 : 사전준비
 - 사업주,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의 근무시설(근무지)를 확인하여 순회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한다.
-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 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개정 2024.10.11.>, <개정 2025.4.29.>

$\text{위험성(Risk)} = \text{사고발생의 가능성} \times \text{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표 5〉 위험성 추정

가능성 \ 중대성	대	중	소
상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④ 3단계 : 위험성 결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성 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인지를 결정한다.

〈표 6〉 위험성 결정

위험성수준		관리기준	비고
6 ~ 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3 ~ 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1 ~ 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⑤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⑥ 5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보고서는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24.12.24.>

제9조(주지방법) 책임자는 재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개정 2024.4.3.>

제10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부 칙<개정 2024.4.3.>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2. 4. 7.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